

[공고] 서울지역 “찾아가는”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 취지 및 목적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2016.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8. 10. 18.) 시행 등에 따라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강연형)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조치사항을 비롯해 감정노동 개념, 보호 정책·법률, 제도 구축 사례 등 교육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사업주/관리자의 제도 개선 인식 향상 및 제도 구축 지원 등

□ 개요

1. 사업명 :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사업
2. 사업 기간 : 2020. 1. ~ 12. / 교육 운영 기간 : 2020. 2 ~ 11.
3. 지원 범위

지원 대상	- 주요 감정노동 직군 사업장/단체/기관 등 -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 MOU 기업 협력사, 민간위탁기관 등
지원 자격	- 위 대상 사업장/단체/기관 내 사업주, 대표, 관리자, 감정노동 업무 담당자, 보건 담당자 등 - 최소 5인 ~ 30인 이내로 구성된 집단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 문의)

4. 교육 장소 : **신청 장소에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강사 출강)**

*교육 장소 없을 시, 사전 협의 후 서울시감정노동센터 교육장(최대 20명 이내) 가능

5. 교육 시간 : **최소 1시간 (최대 1시간 30분)**

6. 교육비 : **무료**

7. 교육 과정

STEP 1. 들어가기	감정노동	감정노동 개념 감정노동 주요 사례와 현황
STEP 2. 이해하기	보호 제도	감정노동 보호 필요성 감정노동 보호 정책, 법률
STEP 3. 배워보기	보호 방안	(법률에 따른)사업주 의무조치사항과 이행 사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모범 매뉴얼·사업장 등)

□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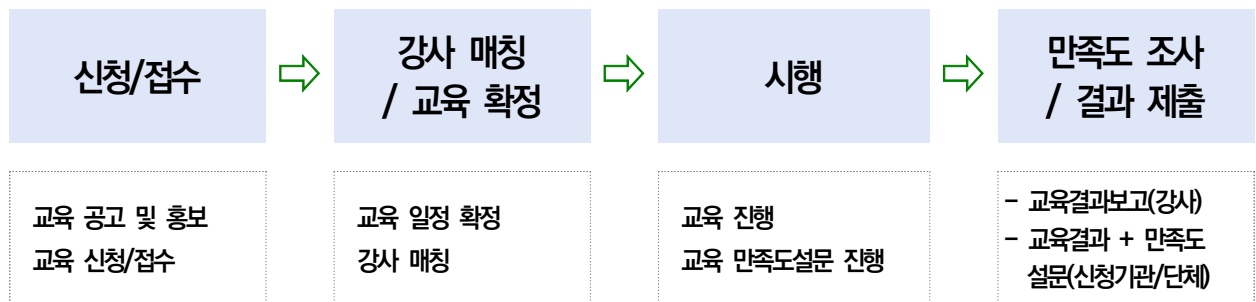
1. 신청 기간 : 2020. 2. 10.(월) - 11. 27.(금) 18시까지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실제 교육은 12. 4.(금)까지 시행 가능

2. 신청 방법 : 센터 홈페이지(www.emotion.or.kr)에서 온라인 신청

3. 신청 결과 : 접수 확인 후, 1주일 이내 신청 담당자에게 '교육 확정 이메일' 발송

4. 운영 절차



5. 교육 결과 :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 신청 담당자'는 아래 서류를 취합하여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①만족도 설문지(수강생 전원), ②결과보고서(교육신청 담당자만 작성)

*온라인 제출 어려울 시, 우편 발송 가능 (교육 신청 시, 온라인 or 우편 선택)

6. 문의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이메일 : jeoh@emotion.or.kr, 전화 : 070-4610-4055 (담당 : 오지은 교육기획위원)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